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15년 12월 9일(수) 17:00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 조익노(044-203-4830), 고승진 사무관(044-203-4831)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이병원(044-203-4630, 김도익 사무관(044-215-4633)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홍승욱(02-2110-3629), 채희만 검사(02-2110-36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김정기(044-200-4330), 김중호 사무관(044-200-4334)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 악용가능성은 4중 장치로 차단 -

-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진정한 소액주주 이익에 부합 -

□ **정부는** 지금까지 공청회,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들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우려는 거의 100% 수용**하여 이미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사후단계의 4중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 가능**함.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②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③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④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

○ 아울러, 오늘 오후 4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동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다음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업재편 관련 현행 상법 규정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고, 우리가 **기업활력특별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일반법에 도입**되어 있음.

○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이익**일 것임.

□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월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정부는 **국회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대기업 악용가능성 등 **우려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09 17:27:08

참 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Ⅰ. 법 전반

1. 동법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

□ 동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적용하여 **특혜소지 차단**

○ ① **조직재편**과 ② **사업혁신 활동**을 통해 ③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④ **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주력산업의 약 30%만 과잉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기업의 일부만 동법 적용 전망

□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기업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 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가 승인할 계획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민간위원장, 산업부 차관), 당연직 정부위원 4인,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14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

□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이 ① **경영권 승계**, ②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또는 ③ **일감 몰아주기**인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규정」을 강화**(제10조)

*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이 불가

□ 또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승인 이전에 배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취소」 근거를 마련**(제13조)

○ 대기업의 동 제도 악용 여부가 승인 이후에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중과**할 예정

2.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동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

□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시급**

* 주력업종 대기업 비중(%, '14) : (조선) 76.5, (철강) 72.2, (석유화학) 80.2, (자동차) 78.3

○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 조선 과잉설비(백만CGT) : ('11)10.8→('14)13.6 / 철강 공급과잉비중(%) : ('12)25.2→('14)26.1

** 한계기업비중('09→'14, %) : (조선)6.1→18.2, (철강)5.9→12.8, (석유화학)8.5→10.7

○ 특히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13.5% → 15.3%)보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9.3% → 14.8%)이 **가파르게 상승**

□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매출의 64.4%)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

* '13년 기준 국내기업 총매출액(4,132조원)에서 대기업 매출액(2,659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

○ **'97년 IMF 위기처럼**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97. 11월~'14. 6월간 부실채권 매입에 직접 투입된 공적자금만 38.5조원

□ 선제적 사업재편에 의한 부실화 차단,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소수주주 및 채권자 이해 보호**

○ 최근 5년간 유가증권시장 내 **합병한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24.6%**로, **전체 평균**인 **-0.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현행 상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려우므로 **한시적 Fast-Track**을 통해 **사업재편 촉진 필요**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09 17:27:08

○ 사업재편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활법에서 도입하려는 **특례가 이미 일반법**에 규정되어 **정부의 지원**이나 별도의 **특별법 불필요**

○ **일본**은 각종 특례를 **특별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우선 도입**하여 실시한 후, **일반법인 회사법에 반영**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

□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사후단계의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 가능**

Ⅱ. 「상법」 관련

◈ 동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 동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 조치들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법인 「회사법」에 도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 「기업활력법」상 특례의 해외 주요 입법례 >

구분	미 국	일 본	독 일
법령	▪ 표준기업회사법(일반법)	▪ 회사법(일반법)	▪ 사업재편지원법(일반법)
내용	▪ 소규모 합병(20%) ▪ 상장회사 또는 2천명 이상 주주를 보유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 소규모 분할 인정(20%) ▪ 소규모 합병 인정(20%) ▪ 간이합병 인정(2/3) * 산업경쟁력강화법(특별법)에 규정 ▪ 주총 소집기간 단축(비상장) ▪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 EU 「신합병지침」에도 규정

□ 동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에 더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음

○ 소규모합병의 경우 소규모합병 인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건도 **20%에서 10%로 낮추었음**

□ 공청회 이후 이해관계자를 추가로 보호하기 위하여 ① 사업재편 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② **소규모분할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③ 간이합병 요건도 **2/3에서 80%로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

□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은 부실화를 차단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수주주와 채권자를 보호**

○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와 채권자에게는 이익

Ⅲ. 「공정거래법」 관련

1. 동법은 특정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한 특례법

□ 동법은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4중장치를 마련해 놓은 만큼, 동법을 통한 **특정 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불가능**

○ 동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을 경우, **민관합동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가능

* 위원장 2인(산업부 차관, 민간위원) 포함, 정부·민간위원 20명 내외로 구성

○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절대 승인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규정 마련

* 예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이 아니고, ②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법 적용 불가

○ 만일 특정 그룹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동법을 악용하여 사업재편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과징금 증과**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09 17:27:08

2. 동법은 공정거래법을 3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4년 유예를 합해 최장 7년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가능?

□ 동법에 포함된 지주회사 규제특례는 대부분 **기존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

□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한 동법의 모든 특례는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

3.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 동법의 특례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사업재편 기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

○ 사업재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다시 준수해야 하며,

* (예)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2년의 유예기간 인정 → (제정안) 동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단, 3년 후에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당초 규제 준수

○ 사업재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제가 유예**된다는 점에서, 증손회사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화한 **「외촉법」상 특례와는 상이**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한 경우,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모두 취득하지 않아도 증손회사 보유 가능

□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동법에 따른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특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시행령 제정시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행자부, 고용부, 중기청 고위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예정

□ 동법은 5년 적용 후 일몰될 예정이며, 주력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공정거래법 특례를 도입한 만큼

○ 동법을 통한 공정거래법 형해화 논란은 지나친 기우일 것으로 판단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09 17:27:08